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」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 신 설 >	개 정[1] 2025. 09. 11.	
제 22 조(금융상품의 개발,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)	**제 22 조(금융상품의 개발,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)**	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	
③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법령 및 계약상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, 휴면 및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	③ 회사는 ---------- ---------- 마련하여야 한다.	관리방안 문구 삭제
1. 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휴면 및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	<삭 제>	
2. 상품의 신규가입 · 유지 단계에서 금융상품 만기 시 처리방법(재예치 · 입금계좌 설정 등) 및 만기통보방법 지정 등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는 한편,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<삭 제>	
<신 설>	④ 회사는 휴면·장기미거래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해 각 호를 포함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단, 회사는 위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1. 금융상품 만기 시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재산의 처리 방법 안내의 시기 및 내용(만기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)에 관한 사항 2. 금융상품 만기 이후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재산 안내의 시기, 내용(만기 후 시간경과에	세부 관리방안 조문 추가

	따른 불이익 사항 등), 방법 및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3.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	
④ (생 략)	⑤ (현행 제 4 항과 같음)	